



성경 번역어 '속건제'의 전근대시기 함의 고찰

- 레위기 5:14-6:7을 중심으로 -

서신혜(한양대), 이선희(중앙대)¹

1. 서론

이 연구는, '속건제'라는 단어가 전근대시기에 어떤 의미를 가진 글자였는지,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에서 이 글자가 사용될 때에 어떤 의미로 읽혔던 내용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역사를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조선까지를 전근대, 갑오개혁을 거쳐 대한제국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를 근대, 해방 이후를 현대라 한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일본도, 우리 스스로도 전근대시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고 받아들이며 이전 시기와 단절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로 이전 시기에 쓰이던 용어와 제도가 제대로 현대에까지 전달되지 못하여 잘못된 평가를 받

¹ correspondence : yisunhui@cau.ac.kr

는 것이 많다. 한글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가 그런 예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는 것은 ‘속건제’라는 단어이다. 속건제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도 여럿이고 각종 주석에서도 어느 정도씩은 다 설명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만 몇 언급하자면, 한동구는 속건제의 기원과 발전 역사를 셋으로 나누고 관련 본문 지식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속건제에 관하여 알아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비교적 초기에 잘 정리하고 사적 변화까지 충실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속건제 연구자들이 꼭 살펴야 하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노세영²은 레위기에서 속건제 연구자들이 꼭 살펴야 하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노세영³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제사 관련 용어를 분석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용어의 본뜻을 정확하게 살리는 번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속건제’를 ‘배상제물/제사’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김만옥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시켜서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체적으로 레위기 혹은 모세오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속건제를 언급한 몇몇 연구들⁴이 있고, 성경 소개를 목적으로 잡지 등에 실린 내용도 여럿이다.⁵

하지만 속건제만큼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달리 이해되는 단어도 많지 않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를 구분하여 설명하지만 둘을 명확히 말하지 못하거나, 속건제를 간단히 말하다 속죄제 설명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의도성 여부를 중심으로 말하려다가 꼬이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한 연구자 내에서 혼동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나온다. 각 연구가 대체로 성경 해당 부분을 정리하면서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인데 연구자마다 정리하는 내용은 같

2 한동구, “속건제(Schuldopfer)”, 『구약논단』 2집(1996년 12월), 105-130.

3 노세영, “레위기에서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안-헛타트, 아삼, 트누파, 트루마”, 『성경원문연구』 36집(2015년), 7-25.

4 김회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2017), 686-689.; 양창삼, 『레위기의 이해』(2017), 50-56 등.

5 한동구, 뒷글.; 노세영, 뒷글.; 김만옥,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구속 연구”(2018년 2월); 김경열,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등.
논문은 아니지만 잡지나 신문에 실은 글도 있다. 김회권, “레위기의 제사신학과 하나님 나라-레위기 1-7장”, 『기독교사상』 48권 8호(2004년 8월), 170-180.; 김경열, “교회를 위한 헌장, 레위기 제대로 읽기(9) 5대제사-⑤속건제: 남의 재산을 가로챈 뒤 지수하여 바친 제사”, 『기독교신문』(2016년 8월 11일); 박철현, “배상제로서의 속건제 5장 14절-6장 7절”, 『그말씀』 333호(2017년 3월), 6-38 등.

지만 그 내용에 대한 정리 의견은 미묘하게 같고 다르다. 여기에서 일일이 각 연구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며 말하겠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은 역사학 및 국문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각 제도나 용어의 용례와 의미를 살펴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뜻의 전달에 적합한지 살펴보는 방식이다. ‘속건제’라는 것에 대해 신학적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연구자가 신학적인 논쟁에 뛰어들어 무언가 덧붙태려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속건제’라는 단어, 특히 ‘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제시할 경우 한글 성경 번역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에 고려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며, 또 속건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해석에 다소나마 참고할 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기존 학자와 목회자가 ‘속건제’ 관련 내용을 말할 때, 원어나 영어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설명하면서도 우리말의 경우는 ‘건’은 ‘허물’이라는 뜻이라고만 말하며 번역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한국학 자료를 제시하려고 한다.⁶ 서두에 밝혔듯, 우리나라 근대 시기의 특징 때문에 전근대 시기와 현대 시기 사이가 단절되어 이전 시기에 통용되던 단어나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으므로 전공 분야를 결합하는 이런 연구와 설명이 신학 분야 연구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2. ‘속’의 전근대시기 함의와 배상 문제

속건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명사 אָשַׁם(아삼)이고, 동사 אָשַׁם(아셈)과

6 적절한 우리말 번역어에 대한 제언을 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은 매우 고무할 일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임미영(“구약성서시대 문화 이해를 통한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구약논단』 69집(2018년 9월), 82-106.)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문화를 충실히 설명하여서 그 결과를 적용하여 어떠한 우리말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는 제언을 하였다.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해당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우리 성경 단어에 대한 이해도 충실히 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 언어의 문화와 번역 언어의 문화 양쪽 문화 이해가 바로 되어 결합할 때 보다 명확한 번역과 정확한 내용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결된다. 동사 ㄹᄡᆞᆫ(아셈)은 “위반하다”, “죄가 있다”, “유죄로 판결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명사형인 ㄹᄡᆞᆫ(아삼)은 위반, 배상(물), 범죄, 유죄, 속건제라는 뜻을 지닌다. 특히 성경에서 이 단어가 속건제의 의미로 쓰인 것이 40여 군데로 가장 많다.⁷ 각각의 구절에서 ㄹᄡᆞᆫ(아삼)을 ‘속건제’라고 번역해야 하는지 ‘배상물’로 번역해야 하는지 등 번역어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글의 초점이 아니다. 그래서 ㄹᄡᆞᆫ(아삼)을 ‘배상물’이라거나 ‘유죄’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논란이 없이 명백히 ‘속건제’로 번역하고 있는 부분인 레 5장 14절-6장 7절을 대상으로 논해보자.

기존 연구들에서는 ‘속죄제’와 다른 ‘속건제’를 말하면서 ‘배상’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한동구도 노세영도 김만옥도 모두 그렇다. 각종 주석에서도 배상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만 속건제를 지냈다면 이 것이 속건제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배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하면서 ‘건’이라는 단어가 ‘허물’이라는 뜻을 지닌 한자라는 것만 말하면서, 이 단어의 뜻처럼 개인의 허물에 따른 보상을 하게 하는 것이 속건제라고 한다.

사실 ‘배상’의 의미는 ‘건’이 아니라 ‘속(贖)’이라는 번역어⁸에 담겨 있다. ‘속’은 조선시대 내내 사용된 법적 용어이자 제도이다. ‘속(贖)’은, 조개 패(貝)와 팔다 매(賣)의 합성어이다. 옛날에 조개가 화폐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명확히 드러나듯, 이것은 재물 등으로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이다. ‘속하다’라고 자주 사용되기도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 등가의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인데, 지불의 이유는 ‘천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값이거나 ‘죄’ 문제로 인한 벌을 대신하는 짓값이다. 값을 치르는 방식은 돈으로 치르는 방식, 직위나 직책을 반납하는 것으로 치르는 방식, 본인이 세운 공(功)으로 치르는 방식, 나이와 성별 등이 비슷한 사람으로 대신 치르는 방식이 있다. 예컨대 노비가 같은 성별, 비슷한 나이의 다른 사람을 구해서 자신을 대신할 사람

7 단어의 뜻 설명과 구절 용례, 횡수는 바이블렉스 8.0(브니엘성경연구소)을 이용하여 정리했다.

8 이에 관해서는 이선희/서신혜, “개항기 한글 성경 번역어 ‘속(贖)’의 함의와 적합성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4집(2019년 10월), 205-231에 자세히 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으로 내는 방식으로 속하여 양인이 되고, 죄인이 공을 세워서 그 공의 가치만큼 죄에 대한 형벌을 속하여 줄이고 나머지 형벌만 당하기도 한다.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 그에 합당한 속물(贖物)을 바치는 것을 속죄(贖罪)라고 한다. 법전에는 죄목별로 속전(贖錢)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사대부나 관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을 받는 대신 속물을 받쳐서 속죄하는 것이 허용되었다.⁹ 이때 징수된 속물(贖物)은 호조나 형조에서 수납하였다.¹⁰ 예컨대 현종 때에 삭녕 현감 윤후익이 어사에게 탄핵당하여 의금부에 하옥되고 장 일백을 때린 후 일 년 반 동안 유배를 보내라는 처결이 내려졌다. 이때 현종이 특별으로 ‘일 년 반의 유배’는 ‘속전’으로 대신하게 하였다.¹¹

이밖에도 다른 벌을 받음으로써 보다 중한 벌을 받은 것으로 치는 방식도 있다. 예컨대 유배형을 받는 대신에 매를 맞는 경우도 있다. 이런 때는 ‘속하는’ ‘매리는’ 의미로 속장(贖杖)이라 쓴다. 「세종실록」 4년 10월 24일 무신 기사에 “도형(徒刑)을 면하고 각각 속장(贖杖) 70을 하라”¹²고 명한 것이 그 예가 해당된다.

이런 원리로 레위기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원리가 일치하는 면이 있음을 보게 된다.

레 5:18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9 「經國大典」 5권, “刑典”의 “推斷”: 文·武官及內侍府有蔭子孫·生員·進士, 犯十惡·奸·盜·非法殺人·枉法受贓外, 笞·杖, 並收贖, 公罪, 徒, 私罪, 杖一百以上, 決杖.

10 「經國大典」 5권, “刑典”의 “贓盜”: 凡贓·贖物, 送戶曹.

11 「顯宗實錄」 6년 1월 9일: 朔寧縣監尹後益爲御史所劾, 下(義)禁府, 以杖七十·徒一年半擬律. 上特命准徒收贖, 後益以醫官, 被罪故也.

12 「世宗實錄」 4년 10월 24일: 除徒年, 各贖杖七十.

레 6:6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 때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두 구절 모두에서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라는 대목이 나온다. 여기서 ‘네’로 표현된 것은 ‘모세’를 말하고, 이후에는 ‘제사장’이 된다. 죄의 크기를 가늠하여 그 죄를 어느 정도의 가치로 ‘대등’하게 바꾸어 줄 것인지 제사장이 결정한다. 마치 조선시대 ‘속’이라는 제도처럼 관장이 가늠하여 가치를 결정한 후 그 가치와 벌을 등가로 교환하게 하는 제도라 조선의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제도 용어이다. 위에 설명한, 현종 때 윤후익에 대해서 ‘현종’이 ‘1년 반 유배형=속건’으로 하라고 특별히 명한 것이 그 예이다.

속은 기본적으로 죄의 크기, 신분의 가치만큼 값을 지불하는 ‘등가성’을 지닌다. 노비 신분을 속할 때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의 사람으로 속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듯 반드시 ‘등가’의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 그저 은혜로 죄를 없애주는 사면(赦免)과 다르다. 그런 맥락에서 속은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속죄제와 달리 속건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없고 반드시 ‘개인적’으로 ‘수시’로 드린다. 그것 역시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3. ‘건’의 전근대시기 함의와 ‘불건불망’

이 연구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건’이다. 노세영은, “속건제에서 ‘건(愆)’이나 영어의 ‘guilt’ 혹은 ‘trespass’는 모두 일반적으로 허물, 죄 등을 의미한다”고 하고, “전무용은 그의 중국어에 대한 이해에서 속죄제에서 표현하는 죄는 일반적 의미의 죄에 가깝고 속건제에서의 건은 실수에 가깝다고 이해한다”¹³ 소개하였다. 전무용의 어떤 글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명확히 표시

13 노세영, 뒷글, 14.

하지 않아서 노세영의 글을 인용하여 설명하자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근대 시기 건(愆)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쓰였다. 이 점을 잘 살펴보면 초기 번역자들이 속죄제와 달리 속건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건(愆)’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였을까? ‘건’은 마음 심(心)과 연(衍)이 합하여 이루어진 한자로, 연(衍)은 ‘자라서 퍼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도를 지나쳐 멋대로 거동하는 모양에서 ‘그르치다’의 뜻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한자가 그렇듯 ‘건’도 다양한 뜻을 담고 있어서 ①허물/과실/죄과, ②어그러지다, ③악질/나쁜 병 등으로 번역된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뜻인 ‘허물’이 ‘건’을 뜻하는 대표적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허물’이라는 뜻은 ‘건’이 갖고 있는 중층적 함의의 가장 바깥 면을 보여줄 뿐이다. ‘건’의 경우, 합자(合字)된 뜻에서 보여 지듯, ‘절대적인 기준이나 법칙을 어기고 위반함’으로써 과생되는 결과가 ‘허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은 ‘절대적인 기준과 법칙을 어기고 위반한 허물’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를 그저 ‘허물’로 이해하는 것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건’이라는 단 한글자만 보아도 ‘불건불망’이라는 네 글자로 이해하였다. 「시경」 “가악” 두 번째 노래에 “不愆不忘，率由舊章”¹⁴라는 대목이 나오고 이것을 「맹자」가 “이루” 첫 장에 인용하여 ‘옛법 따르기를 불건불망하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선왕의 법을 따르고서 잘못되는 자는 없었다”고 덧붙여 풀이¹⁵하였다. 이 내용은 위정자 및 유학자들 사이에 재차 언급되며 정치철학의 기본으로 여겨졌다.

‘불건불망’에서 ‘망’은 잊는다는 의미이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건’의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다음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논어」를 보면, ‘건’이 기준과 법칙을 어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4 「詩經」, “大雅”의 “假樂”: 干祿百福, 子孫千億. 穆穆皇皇, 宜君宜王. 不愆不忘, 率由舊章.

15 「孟子」, “離婁”: 堯舜之道, 不以仁政, 不能平治天下. ……詩云: 不愆不忘, 率由舊章. 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

군자를 모실 때 세 가지 허물(愆)을 저지르기 쉽다. 말할 때가 아닌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 하고, 말할 때가 되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을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한다.¹⁶

군자를 모시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허물을 나열했는데,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눈을 감는 것 자체가 허물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합당한 때'를 어겼기에 허물, 즉 건이 된다는 것이다.

불건불망은 “어기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라고 번역하거나 “잘못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라고도 번역한다. 어기지도 않으면 잘못이 없다. 즉 어기면 허물이 되고 잘못되게 된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무엇을 어기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가? 「시경」, 「맹자」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인 기준, 다른 말로 '이미 정해진 마땅한 바'를 모두 따라 '어기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사용한 '건'이라는 단어는 모두 이런 의미이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을 잘 지켰을 때, 「맹자」의 말처럼 '정치도, 세상도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조선의 기준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 “서문”에

천지와 사시에 두어도 거슬림이 없고 예전의 성인에게서 살펴보아도 그릇됨이 없으니, 백 년 후에 성인이 나오더라도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상의 자손들이 이어서 이루어진 법을 따라 불건불망한다면, 우리나라의 빛나고 밝은 정치가 어찌 주나라에 비교해서 융성할 뿐이겠습니까. 억만 년 무궁한 공적이 마땅히 더욱 오래도록 길이 이어질 것입니다.¹⁷

라고 명확히 써 넣었다. 선왕의 법을 불건불망하는 것을 국가 경영의 핵심 기초로 명시한 것이다.

16 「論語」, “季氏” 孔子曰, “侍於君子有三愆: 言未及之而言謂之躁, 言及之而不言謂之隱, 未見顏色而言謂之瞽.”

17 「經國大典」, “序文” 繼自今, 聖子神孫, 率由成憲, 不愆不忘, 則我國家文明之治, 豈唯比隆於成周而已乎. 億萬世無疆之業, 當益悠久而悠長矣.

그렇다면, 빠짐없이 완전히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 ‘마땅히 따라야 할 완전한 바’는 무엇이었을까? 구체적으로는 선왕의 법, 자연 섭리, 예법, 법률로 정해지고 명시된 기한 등을 뜻한다. 하나씩 간략히 제시하면 이렇다.

먼저 불건불망의 대상 중 대표적인 것은 ‘선왕의 법과 제도’이다. 「경국대전」에 나오듯, 조선 정치가들은 「주례(周禮)」를 유학적 통치의 가장 이상적 모범으로 여겼다. 유학적 통치는 이미 주나라 때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후세는 완전한 『주례』의 모범을 불건불망하는 것을 목표로 두게 된 것이다. 맹자가 강조하였듯, 완전한 선왕의 예악과 제도를 지키되 하나도 빠짐없이 어그러짐 없이 따른다면 정치에 잘못됨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불건불망은 선정(善政)을 펼쳐서 세상 만민을 편하게 살게 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사계절’과 같은 ‘자연 섭리’도 ‘불건불망’의 대상이 된다. 직접적으로 자연 섭리를 어그러뜨린다는 뜻으로 사용된 ‘건’은 문집류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건양(愆陽)’을 들어보면, ‘건양’은 지나치게 왕성한 양기(陽氣)로 겨울철에 날씨가 지나치게 따스한 것을 뜻한다. 즉 겨울에 정해진 양기의 기준을 어긴 결과 겨울이 따스한 때를 이르는 말이다. 예컨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를 말하면서 “겨울에는 건양이 없고 여름에는 복음(伏陰)이 없게 된다.”¹⁸ 라는 구절이 있다.

셋째, ‘예법’도 ‘불건불망’할 기준으로 나타난다. ‘건’은 예법에 대한 서술들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경모궁의궤」에 “제향 의식에 어그러짐이 없었네”¹⁹라는 대목에서처럼 정해진 의례의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따라서 허물이 없었다는 내용에 ‘불건’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성현(成僉)이 성종의 신주를 태묘에 부제(拊祭)할 때를 묘사한 부분에서 “강신제를 행하실 땐 걸음걸이 예에 맞고(玉趾不愆登裸節)”²⁰라고 한 부분에 보이듯, ‘예법’을 지켜 ‘불건불망’하

18 「春秋左氏傳」昭公 4年: 冬無愆陽 夏無伏陰

19 「景慕宮儀軌」卷2, 祀典 樂章: 享儀不愆

20 成僉, 「虛白堂集」, 「拊康靖大王神主于太廟」

지 않으려는 것이 조선 유학자들이었다. 예법은 특정한 의례에서의 예법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군대에서 지키는 군율도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것으로 드러난다.²¹

네 번째로 법률과 명령으로 명시된 ‘정해진 기간’ 역시 ‘불건불망’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예를 들어 ‘건체(愆滯)’라는 법률 용어가 있다. 이는 ‘이행해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지체함’이라는 뜻의 용어이다. 이백의 시 “고풍(古風)”에서 “공을 이룬 뒤 몸 물러나지 않음이, 예부터 허물이 많이 되었던라(功成身不退, 自古多愆尤)” 하는 대목은, ‘건’이 지켜야 할 ‘정해진 기간을 어긴 허물’로 쓰이는 용례이다.

유학에서 ‘불건’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유는 정해진 의례와 삶의 예법을 지켜야만 하늘의 천명이 백성에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하늘의 천명이 본래의 모습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위정자와 군자가 행해야 하는 교화(教化)의 목표이자 최종적 단계가 된다. 「맹자」에서 “선왕의 법을 따르면서 잘못하는 자가 있지 않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말이다. 그렇게 보면 그 ‘불건불망’의 대상이 되는 ‘절대 기준’이야말로 ‘억지로’ 따르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금과옥조’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

성경 원리로 보면, ‘절대적 기준’이란 ‘하나님’이며, 좀 더 풀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계명(십계명 등)’, ‘하나님의 성물’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건’이란 ‘절대 기준을 따르지 않은 허물’이라 했으니, 개항기 한글 성경을 접한 조선인들은 ‘건’을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등을 어긴 허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불건불망과 관련한 전근대 시기 이해 내용은 성경적 원리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앞서 언급한 「시경」과 「맹자」 대목에서 보면, 조선시대 통치자들은 ‘불건불망’하면 결국 ‘잘못되지 않는다’하였다. 앞선 시기 성인의 ‘완성된 완벽한 기

21 「書經」, 「牧誓」에 나오는 내용 및 이것을 이용하여 정조가 한 강의를 내용에 ‘건’의 이런 용례가 나온다. (『弘齋全書』, 9권 經史講義36, 書經7 중 牧誓 부분)

준인 '선왕(先王)의 예악(禮樂)과 형정(刑政)' 등을 '불건불망'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거나 백성들이 항의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 나라가 잘못되지 않고 '잘 통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준'인 율법을 주신 이유와 원리가 같다. 성경 여러 곳에서 '율법'은 엄매는 규율이 아닌 '살게 하는 것'이라 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라고 하였고, 신명기 32장 46-47절에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하였다. 율법, 규례가 '엄매는 끈'이 아니라, 결국 '살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이런 내용은 다른 성경 구절에도 자주 나온다.²² 선왕들의 경전이나 제도, 예악을 절대 기준을 '불건불망'하면 세상이 잘 통치되리라는 의미를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살게 된다'는 설명은 매우 잘 이해되는 개념이었을 것이다. '건'이라는 번역어를 썼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던 효과인 것이다.

요컨대, 전근대 시기 지식인들은 '건'이란 '마땅히 따라야 할 완전한 기준을 어긴 허물'이라는 사실, '속'은 '특정한 죄의 값을 치르는 행위'라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건제'라는 번역어를 만났을 때 해당 내용을 곧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이 처음 번역되던 시기는 전근대 시기의 용어와 제도가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910년 무렵까지 근대신문에서 '불건불망'이 나온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5일 2면 1단 기사에 '불건불망'이 나온다. 또 「황성신문」 1908년 5월 17일 1면 2단 기사에 '불건불망'이 나오는 것을 비롯하여 1910년 8월 14일 2면 1단 사설

22 예컨대 최중진은 역대기의 여러 구절을 설명하면서, 포로 후기의 회복공동체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에 대한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임과 그 지침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율법 등을 지키는 것이 이 공동체가 '살아갈', '회복할' 지침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최중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27집 (2008년 3월), 157.

에도 ‘불건불망’이 나온다. 조정의 특정 사서(史書)뿐 아니라 일반인을 위해 발행되는 근대 신문에 나온다는 것은 이 단어 사용과 이해의 보편성을 더 잘 드러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근대 시기를 거쳐 현대 시기로 오는 동안, 전근대 시기에 쓰였던 ‘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건’이란 단어의 용례와 함의도 완전히 전해지지 못한 탓에, 오늘의 독자는 ‘속건제’라고 할 때와 그 해당 용례를 범주화하는 데 혼동을 일으키기 쉬웠던 것이다.

4. ‘불건불망’의 함의로 본 레위기 5장 14절-6장 7절의 한글 성경 번역 사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조선 지식인에게 ‘건’이라는 한 단어는 ‘불건불망’으로 이해되었다. 이제 ‘건’과 ‘불건불망’이라는 전근대 시기 용어 사용 기준에 따라 레위기 5장 14절-6장 7절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건’의 뜻에 유의하면서,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사례들이 왜 속건해야 하는 일로 분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여호와와 성물을 범한 것’이라 했고, 5장 17절에서는 ‘여호와와 계명을 범한 것’이라 했다. 이것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절대적 기준’을 어긴 허물인 ‘건’에 해당한다. 문제는 레위기 6장 2-3절에 나오는 사례이다. 이 사례를 두고 학자마다 중점을 달리하여 말하곤 한다.

비교적 초기에 속건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한동구는 속건제의 개념, 동기, 제사 의식 등 속건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정리하였다. 그는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으로의 침범을 전제”한다고 한마디로 정리하였으면서도,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동기를 “이웃의 권리와 재산을 침범했을 경우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경우”²³로 나누어 정리했다. 6

23 한동구, 윗글, 106.

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웃의 권리와 재산을 침범했을 경우’로 정리한 것이다. 노세영도 아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잘못된 소유권을 갖는 경우’라고 정리하였으니²⁴ 그 역시 ‘이웃의 것’에 집중하여 속건제 문제를 말한 것이다. 다른 연구자들 역시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았더라도 배상에 치중하여 설명하면서 ‘이웃에게’ 한 것에 집중하여 속건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속건제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에로의 침범’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건’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집중하면, 이때 침범한 것은 ‘이웃의 것’이라기보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거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 즉 절대적 기준을 어긴 허물에 해당한다. ‘이웃의 것을 침범했을 경우’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경우’로 둘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명에 어그러지게 했을 경우’가 속건제의 대상이 된다.

기존 연구 중 김정열의 설명이 이 점에 부합한다. 김정열은, 속건제와 관련된 죄는 **מַעַל** (마알)이라 칭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מַעַל** (마알)은 ‘불성실한 행위, 반역 행위’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죄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를 칭하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죄만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속건제의 범주를 성물을 훼손하는 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서약을 위반한 죄로 분류했다. 이 의견에 따르면 레위기 6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웃의 것을 침범한 때문에 속건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부인한 탓에 속건제에 해당한다.²⁵

쉽게 접하는 주석 중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SV 스테디바이블」²⁶에서 레위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속건제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을 제물로 드린다는 점, 묘사되는 죄가 **מַעַל תַּמְעַל** (티므올 마알), 즉 ‘신실

24 노세영, 원글, 18.

25 김정열, 위 책, 161-162, 171.

26 크로스웨이 ESV 스테디 바이블 편집팀 / 신지철 김귀탁 이용중 정옥배 윤석인, 「ESV 스테디 바이블」, 부흥과 개혁사, 2014. 이 스테디 바이블은 여러 학자가 각 성경을 나누어 해설하고 검토하였는데, 그 중에 레위기 담당자는 리폼드신학교 교수 존 커리드(John Currid), 도쿄 크리스천대학교 교수 노부요시 키우치(Nobuyoshi Kiuchi), 커버넌트 신학교 교수 제이스클라(Jay A. Sklar)가 맡았다.

하지 못한 행위 또는 반역적인 행위를 범하는 것'(레 5:15)이라는 의미를 지닌 다면서 오히려 속건제에서 다루는 죄가 속죄제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까지 하고 있다. 『독일성서공회 해설 성경』²⁷에서도 레위기 6장 부분을 말하면서 이웃의 소유물에 대한 범죄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무겁게 여겨진다면, 이는 범죄자가 이웃의 소유권을 부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한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속건제 관련 죄를 ‘하나님에 대한 이반 행위’로 여기며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또, 『개역개정』 기준으로 해당구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라고 되어 있다. ‘곧’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말이다. 앞의 내용을 좀 더 풀어 써서 쓸 경우 ‘곧’이라고 쓴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כִּי(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일 텐데, 이 단어는 “마치~처럼 as though, ~이므로 as, ~라는 것 때문에 because that” 등의 의미를 지니므로 국어에서 ‘곧’이라는 단어를 써서 앞뒤를 동일하게 풀이하는 것과 쓰임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뒤의 행위를 말하면서 ‘이웃의 것을 침범한 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죄’에 집중한 것임이 한글 성경 번역 속에 표시되어 있다.

이제 실제 한글 성경 번역의 상태에 집중해보자. ‘건’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자. 레위기 5장 14절-6장 7절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집중해 보겠다. 앞서 말한 대로 조선시대 지식인에게 ‘건(愆)’이란 한 단어만으로도 ‘불건불망(不愆不忘)’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점을 고려하며 성경 번역의 변화상을 읽고 평가할 수 있다. 속건제에 대해 말한 부분 중 속건제를 드러야 하는 경우를 설명한 대목 중 하나인 레 5장

27 『독일성서공회 해설 성경전서』(아가페출판사, 2005) 이 책은 독일성서공회에서 관주, 해설한 것을 한국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것이다.

15절의 번역을 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역(舊譯: 1911년): 만일 누구든지 허물을 범하야 여호와와 거룩한 물건에 다투야 아
지못하고 범죄하였스면 성소의 은 세겔을 좇아 은 세겔노 갑슬 헤아려 양무리 중에
서 흠 없는 수양을 가져다가 여호와와 속건제를 드려

개역(1936년)²⁸ 누구든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하였스면 성소의 은세
겔노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무리중 흠 없는 수양을 여호와와 속건제로 드리고

개역한글(1961년): 누구든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개역개정(1998년): 누구든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
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던지’가 ‘든지’로 바뀌는 것과 같은 문법적 변화는 차치하고, 단어와 표현에
주목해서 변화상을 살펴보면, 『구역』의 경우는 ‘허물’이라는 단어, ‘아지못하고’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했고 이런 죄에 관련해서 속‘건’제를 드린다고 제
사 이름을 명명하였다. ‘허물’과 ‘속건제’를 연결시킨 것은 ‘불건불망’에서 ‘건’을
정확히 살린 번역이요, ‘아지못하고’²⁹와 ‘속건제’를 연결시킨 것은 ‘불건불망’에
서 ‘망’을 정확히 살린 번역이다. 번역자가 ‘건’의 의미가 ‘불건불망’과 연결된다
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속건제’라는 번역어를 쓴 것이다. 거기에 ‘갑슬 헤아
려’ ‘속’건제를 드린다고 한 것까지 더해졌다. ‘죄의 크기’에 ‘맞게’ ‘값’을 치르는
것을 ‘속(贖)’이라고 한다는 법률 용어까지 다 살린 것이다. 한마디로 당시 우리
땅에서 사용된 ‘속’, ‘건’의 의미를 잘 살린 성경 번역이었던 것이다.

28 개역성경의 발간은 1938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1936년 구역이 개역된 후 이전에 개역된 신약과 함께 합하여 개역성경 전체가 발간되었다.

29 ‘아지못하고’는 ‘잊어버려서 못 한 경우’이므로 ‘不忘’ 관련 표현이다.

『개역』에 오면, ‘아지못흐고’와 ‘허물’이라는 단어가 모두 빠지고 ‘속건제’의 ‘건’만 남게 된다. 아마도 이때에 개역 작업자는 조선 지식인들 사이의 상식이던 ‘불건불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에 왜 ‘허물’, ‘아지못흐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역에서는 주체 표시 없이 그냥 ‘갑술 헤아려라고 하였던 것을 개역이후에는 ‘너의 지당한 가치를 사라라고 명시했다. 제사장이 물건과 죄의 가치를 정해주는 이것은 ‘관장(官長)이 가늠하여 속물의 가치와 벌을 등가로 교환’하게 했던 속(贖) 제도의 원리와 명확히 일치하므로 당시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개역한글』에서는, 여전히 ‘허물’이라는 단어는 빠진 상태이지만 전과 달리 새로이 ‘범과’라는 단어를 썼다. ‘과(過)’는 흔히 ‘과실(過失)’로 사용되는 용례에서 잘 보이듯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는 어감을 담고 있다. 즉 ‘허물’은 번역에서 누락되었으나 ‘아지못흐고’라는 단어의 어감은 ‘과’라는 단어로 남게 된 것이다.

『개역개정』에 오면, ‘허물’은 여전히 누락되었으나, 전에 빠졌던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다시 나온다. ‘아지못흐고’가 ‘부지중에’로 표현만 바뀌어 다시 부활한 것이다. 물론 해당 본문 중에 나오는 ‘실수, 부주의한 죄’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חטאת(세가가)를 살린 번역일 수 있지만 ‘부지중에’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불건불망’의 의미망 중 ‘잊지 않아야 하는데 잊어버린 죄’라는 의미의 ‘불망(不忘)’을 담아, 이런 일에 대해 드리는 것이 ‘속건’제라고 명명한 의미를 좀 더 살린 효과를 내었다.

요컨대 구역에서, 특정한 일의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명명(命名)하고, 조선에서 ‘불건불망’으로 이해되는 ‘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 ‘허물’과 ‘아지못흐고’라는 번역 표현을 남겨놓았는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건’이라는 단어가 ‘불건불망’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게 되어버린 후대가 ‘허물’과 ‘아지못흐고’라는 표현을 빼거나 다른 단어로 바꾸어 번역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사실 ‘불건불망’의 ‘불망’을 ‘아지못흐고’로 표현한 것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설명하려고 하면서 연구자들이 ‘의도성’ 여부에 더 주목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고 본

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속죄제도 속건제도 모두 의도적 죄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구분은커녕 논의가 뒤섞여버리는 중에 있다. 사실 '의도성' 여부는 속건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아지못호고'나 '부지중에'는 속건제라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건'의 의미와 용례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의 번역도 한 번 살펴보자. 조선에서의 '불건불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레 6장 2절의 번역을 살펴도 의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역: 만일 누구든지 범죄하여 여호와께 허물을 얻어서 혹 물건 맞긴 거시나 혹 무역
흔 거시나 혹 도적질한 거스로 그 이웃을 속였거나 혹 이웃을 압제하였거나

개역: 누구든지 여호와 압제 범죄하여 남의 물건을 맞거나 던집하거나 빼앗고도 사
실을 부인하거나 남에게 억탈을 하거나

개역한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개정개정: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절은 '속건제'(레 6:6)를 드러야 할 죄를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이다. 『구역』에서는 '허물'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쓰고 이것이 '속건제'의 '건'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이웃'과 연결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개역』에 가면 '허물'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이웃'이라는 단어는 '남'이라는 단어로 대치된다. '허물'이 '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놓친 것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남'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 אַמִּית(아미트)를 번역한 부분인데, 이 단어는 '동무, 동료, 친구, 친족' 등을 의미한다. 한국어로 '남'이라고 할 때와는 달리, 이 단어는 훨씬 가까운 관계라는 의미이다. 성경에서 '이웃'이나 '형제'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킨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되

면 이들에 대해 한 일은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기준을 어긴 죄, 즉 ‘불건불망’해야 하는 것을 ‘건망’한 죄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주의 백성에게만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대상이 ‘남’ 일 때와 ‘이웃’일 때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이웃’이 ‘남’이 되면, 계명에 대한 이 반행위(離叛行爲)라는 의미가 희석되어 버린다. 즉 주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절대 지켜야할 기준인 ‘계명’과의 연결성이 희석되므로 ‘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한 표현이 된다.

『개역한글』에서도 역시 ‘이웃’이 아니라 ‘남’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고, ‘허물’이라는 단어 역시 빠진 모습이다. 하지만 대신 ‘신실치 못하여’라는 표현이 새로이 사용된다. 이것은 특정 대상에 대한 ‘준수 태도’라는 의미를 지니며 ‘불건(不愆)’이라는 뜻을 내포한 것이다. 이전에 있던 ‘허물’이라는 단어의 뜻이 ‘신실치 못하여’라는 표현에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역개정』에서는 ‘신실’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개역』이나 『개역한글』에서 ‘남’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다시금 『구역』에서와 같이 ‘이웃’이라는 표현으로 바뀐다. ‘이웃’이라는 표현이 살아나면서 ‘계명’에 대한 ‘준수’ 여부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떠올리기 쉽게 되었고, 그리하여 ‘속건’제라는 명명과 맥락이 연결되었다.

이상에서, ‘속’과 ‘건’, ‘불건불망’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땅에서 전근대 시기 이래 사용되었던 의미 용법을 설명하였고, 그것에 따라 한글 성경 번역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레위기 5-6장 해당 부분을 ‘속’ 혹은 ‘건’의 의미 용법에 따라 설명한 것들이, 히브리어 원문이나 신학적인 설명과 다소 다를 수는 있다. 『구역』에서 『개역개정』까지 바뀌는 과정에서 번역자들의 원문 이해가 깊어지면서 정확한 원문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노력한 결과 번역이 달라진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속’이나 ‘건’에 집중하여 그것의 전근대적 의미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가라는 기준에서 해당 성경을 바라본 결과를 설명한 것이다.

5. 결론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전 시기 패망한 국가의 제도나 문화 등과 의도적으로 단절하고자 한 의식적·무의식적 시도의 결과, 전근대와 현대 사이의 단절로 인하여 여러 제도나 예법 형식, 심지어 단어의 의미조차 잘 전달되지 못한 것이 많다. 성경에 쓰인 단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처음 번역될 때에는 통용되던 단어를 사용하여 적확하게 번역했으나 현대로 오면서 이전 시기의 것에서 눈을 돌리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눈에 그들 단어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속건제도 그런 단어 중 하나이다. 어떤 제사를 ‘속죄제(贖罪祭)’라 명명한 후, 또 다른 한 제사의 이름을 지으면서 ‘속과제(贖過祭)’도 아니고 ‘속오제(贖誤祭)’도 아니라 ‘속건제(贖愆祭)’라 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정확히 그 뜻을 담은 용어로 번역어를 정한 것이다. 하지만 ‘건’이라는 뜻을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속죄제’의 ‘죄’는 알아도 ‘속건제’의 ‘건’은 알지 못한 채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 표현, 원어 표현만을 찾아보고 있는 형국이다. 한글 성경 번역의 부적합이나 이해의 어려움을 선불리 말하기 전에 그 용어의 본래 의미와 용례를 잘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사람의 손을 빌렸을 지라도 성령의 완전한 감화와 역사에 따라 기록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도, 성령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에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덜 고려하는 것 같다. 한글 성경 번역 초기에 원어에 대한 이해도나 참고자료 등이 지금보다 못했을 지라도 그때도 성령의 역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특정 단어가 성경에 선택되었으리라는 것을 최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근대 시기 ‘건’이 가졌던 함의와 같은 현대어가 없다. 단순히 잘못, 허물이라고 하면 ‘절대 기준에 대한 불성실성’이라는 개념을 놓치고 만다. 현대에 와서 한자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청소년층 등을 위하여 성령이 보다 쉬운 한글로 고쳐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는 필자도 동의한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쉬운’ ‘한글’로 바꾸려고 할 때에 정확한 의미인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합한 대역어가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단어를 바꾸는 것 대신에 그 단어가 전에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가졌던 뜻을 보다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³⁰

6. 참고문헌

「한국성경대전집」19,20,36,37권.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2002년).

「독일성서공회 해설 성경전서」(아가페출판사, 2005년)

「ESV스터디바이블」(크로스웨이 ESV스터디바이블 편집팀 / 신지철 외, 부흥과개혁사, 2014년).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경모궁의궤」, 「홍재전서」

「허백당집(虛白堂集)」

「논어」, 「맹자」, 「시경」, 「서경」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김경열, 「교회를 위한 헌장, 레위기 제대로 읽기(9) 5대제사-⑤속건제 : 남의 재산을 가로챈 뒤 자수하여 바친 제사」, 「기독교신문」(기독교신문사, 2016년 8월 11일)

김경열, 「레위기의 신학과 해석」(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년).

김회권, 「레위기의 제사신학과 하나님 나라-레위기 1-7장」, 「기독교사상」48권 8호(대한기독교서회, 2004년 8월), 170-180.

30 최근 우택주는 성서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우택주, “교회갱신을 위한 성서교육 분석과 제언”, 「구약논단」72집(한국구약학회, 2019), 174-201. 한국교회 갱신을 성서교육의 갱신으로 이루려는 방향 제시에 공감한다. 이와 함께 이 글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내용, 즉 우리나라 성경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목회자 스스로 높여야 한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김회권,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모세오경」(서울: 복 있는 사람, 2017년), 686-689.
- 노세영, “레위기에 나타난 중요한 제의적 용어의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핫타트, 아삼, 트누과, 트루마”, 「성경원문연구」36집(대한성서공회, 2015년), 7-25.
- 김만옥,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구속 연구”(광신대 석사논문, 2018년 2월)
- 박철현, “배상제로서의 속건제 5장 14절-6장 7절”, 「그말씀」333호(2017년 3월), 6-38.
- 양창삼, 「레위기의 이해」(서울: 그리심, 2017년), 50-56.
- 우택주, “교회갱신을 위한 성서교육-분석과 제언”, 「구약논단」72집(한국구약학회, 2019년 6월), 174-201.
- 이선희/서신혜, “개항기 한글성경 번역어 ‘속(贖)’의 함의와 적합성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114(한국기독교학회, 2019년 10월), 205-231.
- 임미영, “구약성서시대 문화 이해를 통한 우리말 번역에 대한 제언”, 「구약논단」69집(한국구약학회, 2018년 9월), 82-106.
-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27집(한국구약학회, 2008년 3월), 138-158.
- 한동구, “속건제(Schuldopfer)”, 「구약논단」2집(한국구약학회, 1996년 12월), 105-130.

검색어

궐궐궐(아삼)

속

건

불건불망

속건제

율법

한글 성경 번역어

A Study on the Pre-modern Age's Implication of the Korean
Bible Term 'Sokgeonjae (guilt offering)':

Focused on Leviticus 5:14-6:7

Shin-Hye Seo, Ph.D. & M.Div

Professor, College of Humanities

Hanyang University

Sun-Hui Yi, Ph.D.

Professor, Da Vinci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Bible term “sok-geon-jae(속건제, guilt offering)” through the explanation of the meanings and examples of sok (redemption, 贖) and gun (transgression, 愆) in the pre-modern age of Korea.

www.kci.go.kr

‘Sok’ is use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as a legal term to describe the act of paying the cost. To pay a fair cost in order to escape from the civil service or to clear away the punishment for sin is called ‘sok.’ Often the features of the guilt offering different from the sin offering are explained only as a matter of compensation. But, in fact, compensation is linked to the term ‘sok’ (redemption) rather than ‘geon’ (transgression).

‘Geon’ does not simply mean ‘sin.’ It is used as a term with the meaning of ‘guilt against the absolute standard or rule.’ When the intellectuals of the Joseon Dynasty confronted the Korean Bible term ‘sokgeonjae,’ they could recognize that it is a matter of ‘breaking the absolute standard of God.’ For Confucian scholars at that time, the term ‘geon’ was considered as the same as ‘bulgunbulmang’ (without transgression and without forgetfulness, 不愆不忘). They believed that the nation and its people would be at peace when the law of the late king, which is the absolute standard, is “not broken or forgotten.” It was in line with the Bible principle that says ‘God’s law is what makes us live and be blessed’ (Deut 32:46-47 and so on).

If we have these concepts understood, we can see that the translations such as ‘commit a violation,’ ‘sin unintentionally,’ ‘the proper value,’ and ‘a guilt offering’ were appropriate.

Keywords

sok (redemption, 贖)

geon (transgression, 愆)

bulgunbulmang (without transgression and without forgetfulness, 不愆不忘)

sokgeonjae (guilt offering)

the law

Korean Bible term

- 투고일: 2019년 12월 12일
- 심사일: 2020년 1월 2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월 19일

www.kci.go.kr